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20호

## 2019 경북SW융합클러스터 글로벌級 R&D기술개발사업 재공고

경북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 『글로벌級 R&D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IT·SW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3일  
(재)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I

사업 개요

### □ 사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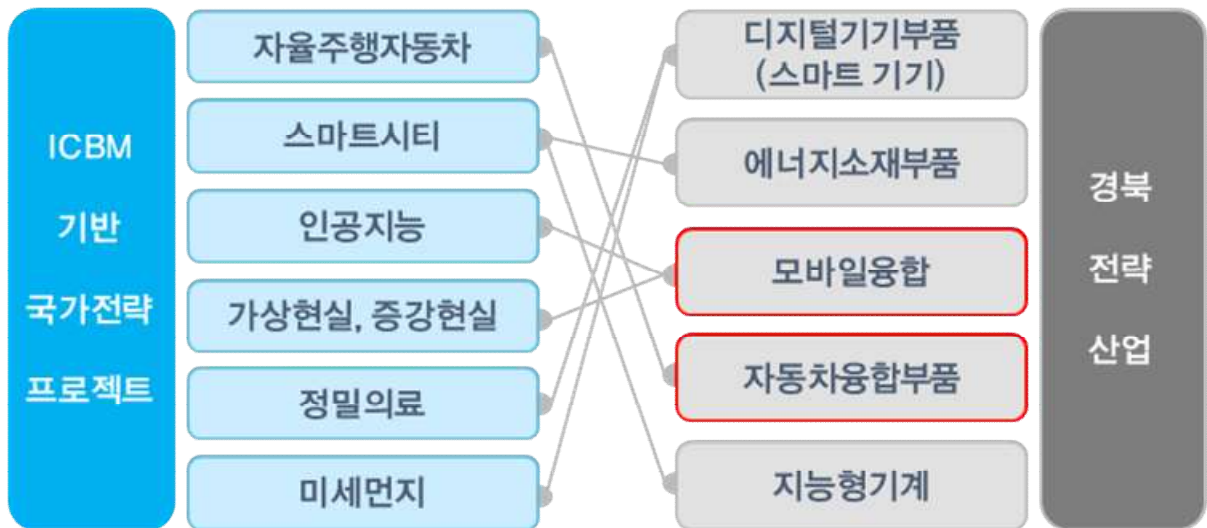
- 사업명 : 경북SW융합클러스터 글로벌級 R&D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전략산업과 SW융합 R&D 및 서비스R&D 지원을 통해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 경쟁력 확보 및 SW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총지원예산 : 520백만원(2019년도)
  - ※ 민간부담금(현금) :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름

구분	자유과제	지정과제
19년도 예산	1.0억원 이하	
지원기간	7개월	

- 사업기간
  - 2019.05.01.~2019.11.30. (7개월)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 1. 지원 분야

- 경북지역 전략산업 중 모바일·자동차와 SW융합 R&D 및 서비스R&D 과제
  - ※ 지역 전략산업과 무관할 경우 서류 심사 시 배제
  - ※ 신청과제는 SW융합 기반의 응용·상용화 기술개발을 요소기술로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경북지역 전략산업]

### 1) 지정과제 분야

- ① 지역전략산업(자동차 또는 모바일)과 SW융합 R&D기술개발 과제
  - ② 지역전략산업(자동차 또는 모바일)과 SW융합 서비스R&D 과제
  - ③ 지역전략산업(자동차 또는 모바일) 연계 해외수요기반 글로벌R&D과제
  - ④ 지역전략산업 해외수요기반 SW융합 글로벌 공동기술개발과제
- ※ 지정과제 RFP 문서 참고

### 2) 자유과제 분야

- ① SW가 융합된 R&D기술개발 과제
- ② SW가 융합된 서비스R&D 과제
- ③ SW가 융합된 구매조건부 과제

※ 서비스 R&D과제 : 산업 서비스R&D(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R&D 해당 없음)

※ 서비스 R&D란?

-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술개발, 비즈니스모델 개발, 인문·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을 포함.

- 서비스 R&D를 통한 서비스 혁신으로 유망 新서비스를 발굴하고, 제조업 중간 투입도 활성화하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
- ※ R&D 개발과 서비스 R&D의 차이점
  - 기존의 제품 및 기술개발 R&D는 새로운 제품개발과 제품생산 공정 개선에 초점을 맞춤
  - 서비스 R&D는 기존 기술개발에 더하여, 비즈니스모델 및 사람에 대한 연구(인문·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연구개발
- ※ 해외수요기반 글로벌R&D : 해외 기업·기관에서 수요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NDA, MOU, 이외 증빙)
- ※ 구매조건부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 : 증빙서류 → 구매 계약서
  - : 우대사항 →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의 금액 구매 계약서

## 2.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 단독수행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

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항, 경주 지역 내 사업자등록증 상 SW기업인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경북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SW개발이 있는 기업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포함) 인정서 기준 소재지가 “경북”지역으로 공고마감일 이전 신청된 경우에 한함
- ※ 주관기관 : 포항, 경주 지역범위 내 입주한 사업자등록증상 SW기업인 중소기업·중견기업
- ※ 참여기관 : 사업자 등록증 상 경북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 3. 지원 프로세스

사업공고	'19.04.03.~04.24.	사업공고	포항TP
▼			
사업계획서 접수	~ '19.04.24.	사업계획서 접수	포항TP
▼			
서면평가	'19.04.25.	지원 자격 적합성 검토, 참여제한 여부 확인	포항TP
▼			
사업장 방문평가	'19.04.26.~29.	사전 현장방문평가	포항TP
▼			
발표(선정) 평가	'19.04.30.	기술의 적합성 및 기술의 창의성 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 추진조직 역량 평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			
선정결과 확정·통보	'19.05.01.	사업자 통보	포항TP→주관 기관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19.05.03.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포항TP→주관 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05.08.	협약체결 → 출연금 지급 (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포항TP→주관 기관
▼			
현장실사 평가	'19.07.~ '19.08.	현장방문을 통한 과제수행 진도점검 정량적 성과목표 대비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포항TP↔주관 기관
▼			
중간평가	'19.08.~ '19.09.	정량적 기술 및 성과목표 대비 달성을 평가 사업비 집해의 적절성 여부 검토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			
최종평가	~ '19.12.18	사업완료에 따른 평가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 보고 /개발완성도 점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 4.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 40%)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 기타사항

- 협약기간 : 2019.05.01.~2019.11.30 (7개월)
- 협약사업비는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비 지급은 경우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 가능함
- 과제당 1명이상 의무고용(사업계획서 내 제시) 및 경북SW융합클러스터 인력양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 1건 이상 의무수강
  - ※ 신규고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
- SW품질컨설팅 수행
  - ※ 연구활동비-SW품질컨설팅비 : 전체사업비 4%
- 정산수수료 책정
  - ※ 연구활동비-위탁정산수수료 : 700,000원
- 특허 출원 또는 등록 1건 이상
- SW저작권 등록 1건 이상
- 인증 1건 이상
- 전문가 활용(TPA) 1건 이상

### III

####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IV

#### 심사 및 선정

##### 1. 서면평가

- 개요 : 신청자격, 제출서류 검토 등 적합성 검토
- 검토대상 : 접수과제
- 통과기준 : 검토항목 기준이 모두 적합할 시 통과  
(부적합 사항이 1개라도 있을시 제외)
- 신청 규모에 따라 서류평가 가능

검 토 항 목	적 합 여 부	
	적합	부적합
지역 전략산업 해당여부		
필수제출 서류 구비 여부		
지원신청 제외대상 여부		

## 2. 서류 및 발표평가

### ○ 자유과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업 경쟁력	보유역량	· 지식재산권 확보 현황 · 인력구성 및 보유 인프라	10	30
	재무상태	· 재정현황 및 자금 출자 계획	10	
	총괄책임자의 능력	·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10	
컨소시엄 구성 경쟁력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역할의 적정성 · 주관/참여기관 간 업무 역할 및 계획 구체성	10	20
	추진전략	·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사업비 편성 및 민간부담금 납부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목표 및 내용	기술성	· 개발 결과물의 기술적 우수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완성도 등	20	40
	상용화	· Business Model의 수익성 · 개발비 대비 이익창출 효과 및 부가가치성	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 지역산업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성	10	
지역기여도	지역기여도	· 경북지역 산업발전 기여도(고용창출, 생산액 등) · 신시장 창출 및 기여 가능성	10	10
	가산점	·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참여 (인당 2점)	6	6
<b>합 계</b>			<b>100(6)</b>	

※ 선정 과제 : 기업경쟁력(30), 컨소시엄 구성 경쟁력(20), 사업목표 및 내용(40), 지역기여도(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지원

※ 총괄책임자 발표(20분 내외) 및 질의응답

○ 지정과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업 경쟁력	보유역량	· 지식재산권 확보 현황 · 인력구성 및 보유 인프라	10	30
	재무상태	· 재정현황 및 자금 출자 계획	10	
	총괄책임자의 능력	·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10	
컨소시엄 구성 경쟁력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역할의 적정성 · 주관/참여기관 간 업무 역할 및 계획 구체성	10	20
	추진전략	·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사업비 편성 및 민간부담금 납부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목표 및 내용	RFP와의 부합성	· RFP에 제안된 기술에 대한 부합성 · 제안된 기술에 대한 개발 가능성	10	40
	기술성	· 개발 결과물의 기술적 우수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완성도 등	10	
	상용화	· Business Model의 수익성 · 개발비 대비 이익창출 효과 및 부가가치성	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 지역산업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성	10	
지역 기여도	지역기여도	· 경북지역 산업발전 기여도(고용창출, 생산액 등) · 신시장 창출 및 기여 가능성	10	10
	가산점	·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참여 (인당 2점)	6	6
<b>합 계</b>			<b>100(6)</b>	

※ 선정 과제 : 기업경쟁력(30), 컨소시엄 구성 경쟁력(20), 사업목표 및 내용(40), 지역기여도(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지원

※ 총괄책임자 발표(20분 내외) 및 질의응답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3. 지원 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각 사업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V

과제 신청 및 접수

#### 1. 신청기한 : 2019. 04. 24.(수) 18:00까지

※ 신청 양식은 포항테크노파크 ([www.ptp.or.kr](http://www.ptp.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2. 제출장소 (방문접수, 우편접수)

- 경북SW융합클러스터 경북센터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제4벤처동 3층
  - 경북SW융합진흥센터, 경북SW융합클러스터 포항지원센터

### 3. 제출서류(지정/자유 동일)

서류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모든 참여인력에 대한 동의서
주관기관(기업인 경우)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	※ 접수 마감일 현재 보유한 기관만 제출하고, 접수 마감일 까지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에 대한 인증 서를 필히 제출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비영리는 면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 필 날인	1부	비영리 및 `19년 창업기업 미 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17~`18년, `18년 창업 기업은 최근 1년(`18년))

### 4. 문의처

○ 포항테크노파크 경북SW융합진흥센터(경북SW융합클러스터 포항지원센터)

☎ 054-223-2173

## 1. 지원제외 검토 및 과제선정 취소

## ○ 지원대상 제외항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을 경우  
※ <http://rndgate.ntis.go.kr> 에서 제재정보 확인 가능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은 제외)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 기준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부도</li> <li>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li> <li>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li> <li>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li> <li>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li> <li>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li> <li>7.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li> </ol>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2.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비율

###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 <sup>1)</sup> 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sup>2)</sup> 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가. 참여기업 <sup>4)</sup> 이 모두 대기업 <sup>3)</sup> 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1 이하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5)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로 함

###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 신규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인력(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신규 고용인력 1명당 민간부담 현금을 5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현물로 납부 가능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임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 \* 대기업의 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 3.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포항테크노파크에 납부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포항테크노파크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징수에 따른 세부적 내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